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가단521827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헌

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대하

변 론 종 결 2021. 3. 23.

판 결 선 고 2021. 5. 25.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253,29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 C가,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D 사이의 별지 기재 1 내지 5 부동산에 대한 2018. 12. 18.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E 사이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19. 6. 7.자 매매계약은 105,253,291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7.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E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31.경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소외 은행, 보험가입금액 142,560,000원, 보험기간 2018. 6. 3. ~ 2019. 6. 2.로 정하여 이행보증보험약정(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2018. 5. 31.경 소외 은행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가 발행한 위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소외 은행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e-MP 거래에 따른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129,600,000원을 변제기한 2019. 6. 2.로 정하여 피고 회사에 대출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9. 6. 2.경 대출금연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2019. 8. 26. 현재 소외 은행에 대하여 위 보험으로 인한 대출금채무 105,253,291원을 연체하여, 같은 날 원고가 소외 은행에 위 금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및 피고 C는 원고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원고가 정한 이율은 그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는 연 9%이다.

마. 피고 회사와 피고 D은 별지 기재 1 내지 5 부동산에 대하여 2018. 12. 18.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8. 12. 19. 피고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피고 회사와 피고 E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9. 6. 7.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피고 D에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 D은 2019. 6. 17.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C :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D, E: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C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지급보험금 105,253,291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인 2019. 8. 27.부터 2019. 9.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일인 2019. 10.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별지 기재 1 내지 5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E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소외 H조합 명의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원고의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105,253,2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 이전에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8. 6. 3.경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일 당시에 이미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날은 피고 회사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날인 2019. 6. 2.로부터 약 6개월 이전인 2018. 12. 18.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18. 12. 18. 당시에 피고 회사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피고 회사의 무자력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보증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불과 5일 만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약정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피고 회사의 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2019. 8. 26. 소외 은행에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이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회사의 무자력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 D에 대하여는 가정적 판단)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D,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별지

1. 경상북도 경산시 I
공장용지 1953㎡
2. 경상북도 경산시 I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J
위 지 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30.24㎡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사무실 및 기숙사, 창고
1층 168.39㎡
2층 62.55㎡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480㎡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기숙사 및 공장
지층 49.66㎡
1층 242.88㎡
3. 경상북도 경산시 K
도로 4㎡
4. 경상북도 경산시 L
도로 24㎡

5. 경상북도 경산시 M

도로 3㎡

6. 경상북도 경산시 N

입야 288㎡ .끝.